

환경·무역연계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

- OECD, WTO/CTE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

환경부

1. OECD무역환경전문가회의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요

가. 설립연혁 및 회원국

'48년 4월 마살플랜의 효과적 집행을 통해 서유럽국가의 경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설립된 구주경제협력기구를 모태로 하여 미국의 전후 경제적 지위변화, 유럽경제의 급속한 부흥, 광역 경제협력체의 필요성에 따라 확대·발전시켜 '61년 9월 30일 창설된 국제기구로서 '94년 멕시코가 가입하여 '95년 현재 25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다.

나. OECD의 성격

OECD는 협상을 위한 국제기구가 아니고 회원국간의 상호관심분야에 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는 기구이며 활동대상분야가

편집자 주) 최근 OECD 및 WTO에서 논의한 무역과 환경 문제 연계논의와 관련 국제적 논의 동향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역·재정·구조조정 등 경제문제 외에 환경·교육·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를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

다. 조직과 기능

이사회: 전 회원국으로 구성된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각료이사회(연 1회)와 상주대표이사회(통상 2주 1회)로 구분

- 보좌기구로 집행위원회, 특별 집행위원회가 있음
- 위원회: 실질적인 토의기구로서 26개 분야별 전문위원회
- 경제정책위원회, 통화·외환 문제위원회, 환경위원회, 개발원조위원회 등
- 환경위원회: 회원국간에 적용시킬 국제적 환경규범의 토의·채택 등
- 우리나라는 '93년 7월 옵서버 가입
- 산하에 13개 작업반 설치(오염방지·통제그룹, 화학물질 그룹 등)
- 사무국: 이사회 및 각 위원회의 활동지원기구(약 2,000명)
- 사무총장, 차장(3인), 13개

국·센터

- 총 178개 OECD의 제반 결정·권고·선언중 환경분야가 72개이며

○ 연중 250여회의 실무위원회 회의중 환경관련회의가 70여회

2) 무역·환경전문가회의의 성격

환경목적을 위한 무역규제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OECD에서 환경정책과 무역정책의 상호조화를 위한 구체적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구성된 특별 전문가회의로 '93년 6월 OECD각료회의시에 무역과 환경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절차적 가이드라인(Procedural Guideline)을 채택하였으며, 절차적 가이드라인의 세부분석을 위하여 무역위원회와 환경위원회 공동주관으로 동 전문가회의를 진행('93년 이후 11번째 비공식회의)하고 있다.

그간의 작업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 '95년 6월 OECD 각료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3) 회의의 주요내용

가. 생산공정 및 방법-PPMs
PPMs는 그간 가장 많이 논의된 핵심적인 과제로서 각료회의 보고서중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PPMs에 근거한 무역조치를 제품관련 또는 제품비 관련 특성으로 구분하고, 제품 비관련 PPMs조치가 현실적인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하고 또한 PPMs 조치가 보호무역주의에 이용될 위험성과 일방적 조치로 인한 타국 관할권의 침해(extra-jurisdiction)를 우려하고 있다.

PPMs조치의 분석대상을 동기, 효과성, 실행가능성, 효율성, 대체수단분야로 구분하여 이론적·경험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기술적·경제적 어려움으로 PPMs에 근거한 무역조치의 실행가능성이 적으며, 환경목적 달성을 효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각국은 전반적으로 PPMs에 근거한 무역조치가 최종 수단이어서 아니며, 무역왜곡 효과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나. 무역·환경 분쟁해결

무역분쟁의 해결절차가 환경분쟁의 경우보다는 발전되어 있으며 환경분쟁의 경우 국제환경협약(MEA)에서 주로 규정하고 있다.

GATT/WTO 체계에서의 분쟁해결절차와 국제환경협약에서의 절차를 포괄할 수 있는 체계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MEA 등에서 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한 협의, 정보교환, 국제협력 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환경관련 분쟁의 경우 환경전문가의 적절한 참여를 통한 무역·환경의 보완 필요성이 제시(WTO의 TBT/SPS 협정 등)되고 있다.

다. 환경목적의 무역조치 사용
무역조치 사용대상이 되는 환경범위를 국내, 외국, 국경간 및 지구환경으로 구분하고 각 범위로 무역조치의 효과를 언급했다.

외국의 환경보호를 위한 일방적 무역조치가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상계관세의 부당성을 지적했으며 지구환경보호를 위하여 채택된 MEA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무역조치의 유용성은 인정하되, 국제적 합의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론으로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의 일부로서의 무역조치가 가능한 국내제품 기준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라. 무역·환경 주요 이슈에 대한 요약

환경정책과 무역에 관한 주요 이슈로서 경제적수단, 환경기준의 조화, 전수명 주기관리(LCM), 경쟁력과의 관계 등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2. WTO 무역환경위원회(CTE)

1) WTO 체제의 출범

'47년 GATT가 체결된후 8번째 다자간협상인 UR이 타결됨에 따라, GATT체계는 발전적으로 해체되고 세계무역기구 체제가 탄생했으며 UR 타결과 함께 '93년 12월 15일 117개국 이 제네바에서 WTO체제 출범을 위한 최종협정문을 채택하여 동 기구 설립의 법적기초를 마련했다.

UR 최종 의정서를 서명한 '94년 4월 마라케쉬 각료회의에서 WTO내에 "무역환경위원회"설치를 결의하고 "무역환경결정문"을 채택했으며 WTO는 최고의결기관인 각료회의산하에 무역환경위원회 등 4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94년에 이미 WTO 준비위 산하에 무역환경소위를 구성하여 5차의 공식회의 개최했다.

2) WTO무역환경위원회 논의 과제

『무역과 환경에 관한 결정문』에서 무역환경위원회(CTE)의 우선 논의대상으로 7개 과제를 선정했다.

① 국제환경협약 등에 의한 환경목적의 무역규제조치와 국제무역규범과의 관계

②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조치와 국제무역규범과의 관계

③ 국제무역규범과 환경부과금·세금, 표준·기술규정, 포장·재활용, labelling 등 상품요건과의 관계

④ 환경관련 무역조치의 투명성

⑤ 국제환경협약과 국제무역규

법의 분쟁해결 절차

⑥ 환경조치의 시장접근 제한

⑦ 국내적으로 금지되는 상품의 수출문제

CTE에서는 논의된 결과는 '96년 하반기에 개최예정인 제1차 WTO각료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며, 보고결과를 토대로 무역·환경 연계가 구체화 될 전망이다.

3) WTO/CTE 제1차회의의 주요내용

가. 국내관금품의 수출문제

국내에서 환경보전 목적에 의해 판매 금지된 제품(폐기물)을 수출하여 무역상대국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데 대한 논의로서 '91년에 GATT에서 작성된 초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방안과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이 제기됐으며

일부 국가는 "기술실무작업반" 설치를 제안하였고(나이지리아 등) 미국, EU는 타의제 검토후 재논의 할 것을 제의했다.

관금품 문제는 환경보전에 직접적인 유해성이 있으므로 예외 사항(GATT 제20조)의 적용가능도 제기했다.

국제환경협약에서 규제하는 내용에 대해 WTO가 규제행위 및 비당사국에 대한 안전장치 역할을 할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사전통고승인(PIC) 절차를 원활히 하도록 수입국의 능력형성이 필요하며, PIC 절차개발을 위한 UNEP/FAO 노력을 평가하고 있다.

국제환경협약에서 대부분 관금품을 언급하고 있으며, 추가 적용시 MEA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바,

WTO에서의 논의 자체에 의문을 표시(미국, 노르웨이 등)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자국의 이해를 감안하여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자제하였으며, 아프리카 국가들이 주로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

나. 향후 회의 일정

'95년중 2개월 간격으로 6회의 공식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전반기에 전의제에 대한 1차 논의를 마치고, 9월부터는 주요 의제에 대한 중점 논의를 진전시킬 예정이다.

12월 이후부터 각료회의 권고 보고 사항에 대한 작업개시 예정이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제공 서비스 안내

EIAK-NET로 21세기 전자 공업을 준비하십시오.

본회에서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회원사에 대한 서비스 혁신의 일환으로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새롭고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각종 전자공업통계와 EIAK 정보 등 전자관련 DB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신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EIAK-NET 가입안내

구분	이용요금	비고
ID 등록비	무료	POS Serve 사용 분당 20원
월사용료	월 1만원	※유료정보는 서비스 별도 부과

가입문의 : 한국전자공업진흥회 자료과

TEL : 553-0941/7 (교 : 45)